

회장 및 감사 선출 규정

개정 2022. 03. 22

개정 2019. 07. 23

제정 2013. 05. 0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회장 및 감사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선출권) 회장 및 감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3조(선출권) 본 학회 정관 제12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4조(회장 후보자 등록)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서 공고한 일정에 따라 입후보 신청서 및 출마소견을 제출하여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본 학회는 후보등록 결과를 회장 선출을 위한 평의원회 개최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5조(선거 방법) ① 회장 선출은 평의원회에서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회장 선출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는 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차 투표의 최상위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 1차 투표의 최상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점자 전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3. 최상위 득표자가 1인이고 차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차점자들에 대한 재투표를 먼저 실시하여 차점자 재투표의 최상위 득표자와 1차 투표 최상위 득표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차점자 재투표 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위에 의거 결정한다.

가. 본 학회 정회원 가입일이 빠른 자

나. 정회원 가입일이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

4. 2차 투표 후보자는 2차 투표 직전에 다득표 순으로 10분 이내의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③ 회장 선출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 규정 제5조 제2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방법과 동일하게 3차 투표를 실시한다. 3차 투표에서는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회장 선출 2차 투표 또는 3차 투표에서 득표가 같을 경우에는 제5조 제2항 제3호의 가



목, 나목에 의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⑤ 감사 선출은 평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조(당선자 공고) 당선자가 확정되면 회장은 평의원회 결과를 정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이사회의 결의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4조(회장 후보자 등록) 및 제5조(선거방법))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